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06

발의연월일: 2024. 8. 30.

발 의 자:황 희·부승찬·박용갑

추미애 • 정성호 • 김병주

허 영·한민수·김준형

박균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장교 및 부사관은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 확보가 군에 필수적이므로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 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사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1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시 현역병"을 "당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현역병"으로, "사람(이하"를 "사람(장교, 준사관및 부사관의 경우 가입일 현재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사람으로 한정한다. 이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비과세 적용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1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 대한 비과세) ① ----당시 장 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 준사관, 부사관 및 현역병-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사람(장교, 준사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 및 부사관의 경우 가입일 현재 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 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 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 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 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 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 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 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만. 비과세 적용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2. (생 략)

② ~ ⑤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